

<p>제2020-62호 2020년 4월 1일(수)</p>	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	<p><b>시 정 지 표</b></p> <p>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0-8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(이순신광장로 147 일원) 3
- 여수시 고시 제2020-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7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0-889호 도로지정 공고(호명동 816) 8
- 여수시 공고 제2020-894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9
- 여수 상하수도사업공고 제2020-2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0

기 타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##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

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.

2020. 4. 1.

### 여 수 시 장

#### 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등

위 치	지 정 내 용					관리자	지정 사유	비고
	유형	등급	연장(m)	높이(m)	면적(m <sup>2</sup> )			
이순신광장로147 (중앙동 247번지) 일원	붕괴 위험	D	58	5~13	483	여수시장 (건설과장)	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정비로 재난상황 방지	

#### 2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※ 관련법 : 『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』 제10조제1항

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
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
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
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
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바. 인·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우리시(건설과)와 협의를 하여야 함.

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3.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: 2020. 4. 1.

### 4.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

가. 사업개요 : 균열 석축 및 급경사지 정비

나. 사업비 : 4억원

다. 사업기간 : 2020. 3. ~ 10.

※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실시설계용역 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# 5. 의견수렴결과

가. 공고기간 : 2020. 2. 25.(화) ~ 3. 10.(화) 14일간

나. 공고내용 :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범위, 금지사항, 정비계획 등

다. 공고대상 :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

라. 공고장소 : 여수시 시보, 홈페이지, 중앙동사무소 게시판

마. 수렴결과 : 기한 내 제출된 의견 없음.

### 6. 관련근거

가.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등

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### 7. 문의처

- 여수시청 건설과 지역개발팀 (김준현 주무관, ☎061-659-4056)

붙임 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(1/1200)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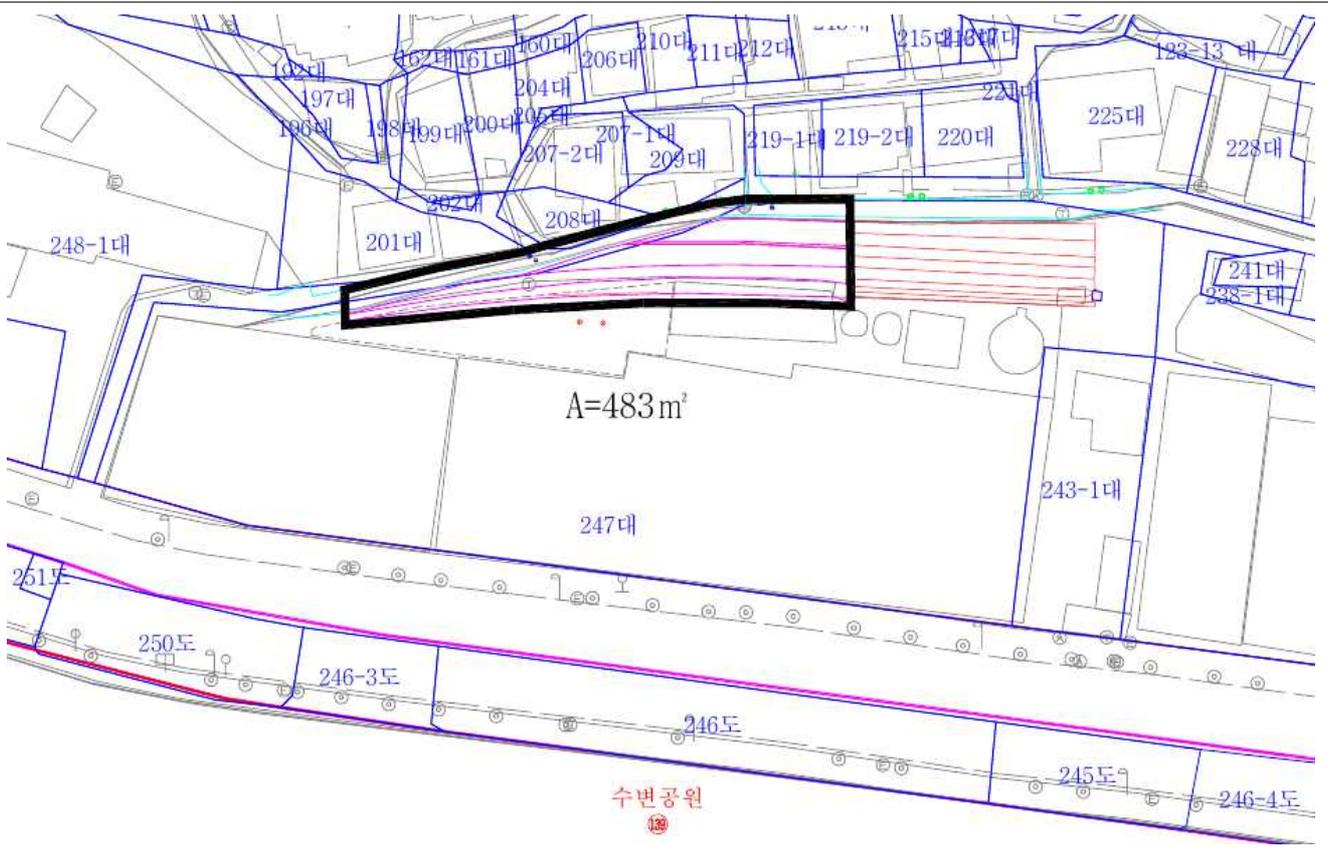
# □ 위치도 및 현황사진

위 치	이순신광장로 147(중앙동 247)번지 일원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# □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(1/1200)

위 치 이순신광장로 147(중앙동 247)번지 일원



##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

여수시 연등동 311 외 3필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1.

### 여 수 시 장

1. 사업명칭 : 여수시 연등동 311 복합시설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아시아신탁(주) 대표 배일규  
{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, 13층(대치동)}
3. 사업위치 :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311 외 3필지
4. 사업개요
  - 가. 대지면적 : 3,555㎡
  - 나. 연 면 적 : 18,615.48㎡
  - 다. 규 모 : 지하 2층~지상 20층, 공동주택(도시형 생활주택) 1동, 269세대
5. 사업기간 : 2020. 7. 1. ~ 2022. 8. 25.
6.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
  - 가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  - 다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
  - 라. 「도로법」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
  - 마. 「하수도법」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
7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061-659-4098)에서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.

## 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호명동 816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### 1. 도로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계		34.67	6	208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호명동	816	34.67	6	208		

### 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### 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4. 1.

여 수 시 장

##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 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## 여수시장

### 1. 폐업대상 업체

상 호 (대표이사)	영업 소재지	폐업대상 건설업종 (등록번호)	법인등록번호	폐업일자	폐업사유
주식회사지아이 피그룹 황*섭	여수시 봉산남6길11-7 (봉산동)	금속구조물·창호·온실공사업 (여수2011-07-02)	206211-0043***	2020.3.30.	사업 포기

2. 공고 기간: 2020.4.1. ~ 4.15.(15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### 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

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(청문)에 따라 행정처분(입찰 참가자격 제한)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##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장

### 1. 대상업체

업체명 (대표자)	소재지	예 정 된 행정처분	청문일시	처분 법적근거 및 사유
(주)양*중합건설 (임*희)	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수양길 1**-1*	입찰 참가자격 제한 (1개월 이상 3개월 미만)	2020. 5. 4.(월) 10:30	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제1항제6호 - 공동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

2. 공고기간 : 2020. 4. 1. ~ 5. 4.(33일간)

3. 근 거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

4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시보

5. 공고내용 :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

가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나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다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문 의 : 여수시 수도행정과 오민주(☎061-659-4857)